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이스트만·케미칼사,
식품보존제의 국제카르텔에
참가함으로써 법무부에
벌금 1,100만불 지불에 합의**
- 식품방부제 업계에 대한 최초의
형사소추

미국 법무부는 지난 '98년 9월 30일 미국의 대형화학약품 제조업체인 이스트만·케미칼사가 식품보존제의 국제카르텔에 참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100만불의 지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간 약 2억불 상당의 솔베트(소루빙산, 칼슘 및 솔루빙산 함유)가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솔베트는 주로 치즈나 기타 일용식품, 생선등 구이류 및 기타 가공식품에서 수분이나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서 사상균 방지제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보존제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의 클라인 국장은 「이번 사건은 반트러스트국이 전부터 시행하여 온 국제카르텔과의 싸움을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에게 가

격을 인상하고 미국시장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제카르텔을 격퇴하는 반트러스트국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스트만·케미칼사의 기소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제출되었는데, 이스트만·케미칼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협력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스트만·케미칼사는 테네시주의 킹스포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카르텔 시행기간 중 동사는 텍사스주의 쟈코레트 바이유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솔베트를 생산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95년 1월경부터 '97년 6월경까지 이스트만·케미칼사는 자신의 사원을 통하여 솔베트 시장에서 경쟁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솔베트 제조업자와 공모하였다.

법무부는 이스트만·케미칼사의 대표자가 공모자들과 함께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솔베트 가격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장을 통해 이스트만·케미칼사가 문제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솔베

트의 가격에 관한 합의에 참가하였음

② 위의 합의를 통하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솔베트의 가격을 일정한 수준까지 인상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③ 동 합의에 따라 가격을 발표하고 견적서를 받음

이스트만·케미칼사는 반트러스트법 제1조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으며, 동 법은 법인에 대하여 최고 1,000만불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이 벌금액은 공모자가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동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2배가 벌금의 법정최고액인 1,0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중 높은 금액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 '98. 9. 30, 미법무부 발표문

보잉사 및 에어버스사의 가격 인상 반트러스트 조사대상에

세계 최대의 상업용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에어버스사가 발표한 최근의 가격 인상에 대하여 미국 워싱턴 및 유럽연합 브뤼셀의

반트러스트 규제당국들이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대변인은 11월 26일, 동 회사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두 회사가 가격 설정 시에 협력하였음을 부인하였다. 시애틀에 소재한 보잉사의 대변인인 Sean O' Donnell은 논평을 회피하였으며 FTC에 문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FTC 관리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의 경쟁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가 이들 회사에 "일련의 질문들"을 송부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우리는 상당한 분량의 답변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이를 평가중이다"라고 Van Miert는 밝혔다.

FTC의 조사는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월 26일 최초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제품 가격 인상에 뒤이은 것이었다. 보잉사는 23년만에 처음으로 7월 21일 항공기 가격을 5% 인상하였다. 에어버스사는 9월에 제품 가격을 3% 인상하였다. "도대체 담합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한 에어버스사의 대변인은 익명을 전제로 언급하였다.

작년에 유럽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140억달러 규모의 보잉사와 맥도넬 더글러스사간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하였었다. 유럽위원회는 보잉사가 몇몇 미국 항공사들과 체결한 독점적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동의한 이후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였다.

보잉사와 에어버스사는 모두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분투해 왔다. 오랫동안 선두였던 보잉사는 시장의 약 60%를, 에어버스사는 약 30%를 점유하여 왔다.

에어버스사는 최근 사실상 보잉사의 항공기만을 구매해 왔던 영국항공으로부터 85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으며, 일단의 남미 항공사들로부터도 35억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약속을 얻어내었다.

항공산업 담당관리들은 이러한 주문을 얻어내기 위해 에어버스사는 가격을 상당히 인하하여야 하였으며, 아마도 손익분기점 이하의 수준까지 인하하였을 것이라고 하여왔다. 이들은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종종 수익성 높은 재고부품의 후속 납품, 애프터 서비스 및 이후의 추가 주문 등을 기대하고서 할인가격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

보잉사는 '97년도에 1억 7,800만달러의 적자를 본 후 가격 인상의 압력에 시달려 왔는데, 동 회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반세기만에 처음이다. 보잉사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 사장인 Ronald B. Woodward는 회사를 떠나야 했으며, 회사 임원들은 비록 에어버스사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보잉사의 우선순위는 수익성이 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상업용 제트 항공기의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20% 인하되었으며, 이는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이윤폭을 압박하여 왔다. 에어버스사의 수입은 61%가 감소하여 작년도에 1억 4,700만달러였다.

'98년 4월 1일부터 에어버스사의 최고경영자가 된 Noel Forgeard는 에어버스사가 통합 단일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에어버스사는 4개국의 느슨한 컨소시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에 참여한 업체들은 프랑스의 Aerospatiale사, 독일의 다이물러사, British Aerospace사 및 스페인의 Construcciones Aeronauticas SA이다.

구성이 새로워진 에어버스사는 궁극적으로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분석가들은 가격고정 혐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 반대이다"라고 컨설팅 회사인 Avmark International 소속인 런던의 분석가 Daniel Solon은 말하였다. 가격 인상은 "이들 두 회사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Forgeard 에어버스사 회장의 전임자였던 Jean Pierson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격을 인하하였다고 하였다. 보잉사는 에어버스사의 가격 인하에 똑같이 대응하려 하였다. "현재 이들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에 덜 민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옳은 영업정책을 지니고 있다"라고 Solon은 언급하였다.

유럽위원회는 가격 고정 혐의가 입증된 회사들에 대하여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8년 10월, 동 위원회가 대형 스위스 전기제품회사인 Asea Brown Boveri Ltd.에 대하여 난방용 배관을 둘러싼 가격고정을 이윤

로 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였다.

■ '98. 11. 27, The New York Times

**미·유럽 반트러스트 규제당국,
엑슨-모빌 기업결합 조사할 듯**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규제당국들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회사인 엑슨사가 미국 제2위의 석유 및 가스회사인 모빌사를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신문은 11월 26일 이들 두 회사간의 협상이 상당한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해 기업결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결합된 기업의 주식 시가 총액은 2,380억달러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계 기업결합이 된다.

양 회사 모두 기업결합 협상에 대하여 논평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당해 협상에 정통한 자들은 11월 26일, 11월 30일 내지 12월 1일에 뉴욕에서 기자회견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양 회사의 이사회가 아직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비록 협상이 상당한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지만 대형 기업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시시켰다.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유럽연합 반트러스트 규칙에 따라 엑슨-모빌 기업결합을 심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 관리는 유럽과 미국 경쟁당국간에 고도의 협력이 이루어

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럽연합의 심사는 모빌사와 British Petroleum사(이하 "BP"사라 함)간의 유럽 내 합작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들은 2년 전 정유, 그리고 연료 및 운할 유 마케팅에 관한 유럽 내 활동을 결합하였다.

미국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연방 거래위원회(FTC) 경쟁국 관리들로부터 엄격한 반트러스트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관련산업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던 FTC는 지난 8월 발표된 바 BP사가 550억달러로 Amoco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분석도 끝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11월 26일 추수감사절 휴가 관계로 휴장하였으나, 유럽의 대형 석유회사들의 주가는 엑슨사의 모빌사 인수가 이와 유사한 석유회사들간의 기업결합을 야기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해 상승하였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 석유 가격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세계 석유산업은 근본적 변화의 직전에 와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한 재무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은 두 회사간의 규모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로 인해 이번 기업결합이 동등한 기업간의 결합으로 구성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증권가의 분석가들은 이번 기업결합 계획이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BP - Amoco 기업결합은 연간 비용절감액으로 20억달러를 목표로 세워 놓은 상태이며, 분석가들은 엑슨-모빌 기업결합은 연간 40억달러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98. 11. 27, Financial Times

**미·일, 독점금지 행정에서
상호개입에 합의**

미·일 양국정부는 불공정한 기업결합·제휴 및 카르텔행위의 적발에 대하여 행정상 상호개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 전반기에 2국간 협정을 체결, 미·일 쌍방이 상대국의 독점금지법에 기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측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의 저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반트러스트당국은 미국시장에서의 가격인상을 노린 일본기업 등의 카르텔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협정을 근거로 일본에서의 적발요청을 다수 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법무부의 클라인 반트러스트 국장은 일본기업의 국내외에서의 담합행위를 비판, 감시·단속을 위해 또다른 미국 반트러스트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제휴하여 일본 등과의 협력체제를 정비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일본정부도 「미국의 일방적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2국간 협정의 체결이

국제적인 흐름」(공취위 간부)이라고 판단하였다.

미·일 정부는 이번 가을부터 경쟁 정책의 제후 강화 협정 체결을 위해 교섭을 개시, '99년 6월의 주요국 수뇌회의(Cairn Summit) 이전에는 조인할 방침이다.

협정에서는 ① 상대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독점법 위반의 안건을 상호간에 통보할 의무, ② 2국간에 걸친 국제적인 안건의 수사·조사시에 협력할 의무, ③ 권고, 경고,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의 행정처분시에 상대국의 의향을 존중할 의무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상호개입은 상대국의 주권과 국내 법규를 존중하는 것이 전제로 되나, 산업계 등에서는 「미국 반트러스트당국에 의한 내정간섭의 용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 대법원은 '98년 1월, 팩시밀리 감열지의 가격카르텔 사건에서 일본제지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협정결과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의 대응을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 '98. 11. 28, 일본경제신문

마이크로소프트사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원고 1개 주 소 취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트러스트법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와 함께 원고가 되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2월 7일 제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다. 동 주정부는 PC통신 최대기업인 아메리칸 온라인(AOL)사에 의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사의 취득계획 등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업계의) 경쟁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컨던 법무장관)라고 제소 취하 이유를 설명하였다.

동 주의 판단이 재판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R 전략에는 호재로 들듯하다. 법무부와 미국 20개 주는 '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를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 등이 반트러스트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제소, 10월에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공판은 8주째를 맞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컨던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AOL사의 예를 들면서 인터넷업계에서의 경쟁이 건전하다는 점을 지적, 이번의 재판은 「경쟁업체를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하이테크업계의 기술혁신은 약화되고, 경제 및 소비자의 이익도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경제학자인 프리드만의 분석도 인용하였다.

동 주의 태도변경이 앞으로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미지수이나, 지금 당장 다른 주들에서 이를 따르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미 법무부도 「재판에 영향은 없다」고 강경한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초부

터 일관되게 「당사를 둘러싼 반트러스트 제소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업계는 하룻밤 사이에 경쟁구도가 바뀐다」(윌리엄 뉴컴 수석부사장)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98. 12. 8, 일본경제신문

미 대법원 판결, 반트러스트법에 유연한 자세 입증

보다 유연한 반트러스트법 적용 경향의 연속으로서, 미국 대법원은 경쟁 공급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구매자와 공급업체간의 합의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12월 14일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Nynex Corp.와 구식 전화교환기 교체업을 담당하는 AT&T Technologies사가 관련된 1996년 뉴욕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Nynex사와 AT&T Technologies사간에 다른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상호간에 거래하기로 한 합의는 집단적 보이콧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었다.

대법원의 반트러스트 선례에 따르면 보이콧은 당해 합의의 상세한 내용, 또는 반경쟁적 효과에 관계없이 위법한 거래제한이다. 이러한 단원위법의 원칙은 반경쟁적일 수 있는 대다수의 거래제한협정과 대비되는데, 이들은 실제로 경쟁이 피해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대법원의 의견을 작성하면서 Stephen Breyer 대법관은 하급법원의 잘못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협정을 보이콧으로 해석한 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보이콧은 경쟁업체들간의 합의를 수반함을 지적하고, 구매자가 한 공급업체를 다른 공급업체보다 우대하기로 한 결정은, 비록 그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분석결과에 따라 위법할 수는 있겠으나 자동적으로 보이콧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공급업체 변경의 자유는 반트러스트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경쟁과정의 핵심에 놓여 있다”라고 Breyer 대법관은 말하였다.

이 주제에 대하여 수년간 하버드 법대에서 강연하여 온 반트러스트 전문가로서, Breyer 대법관은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어 정실주의 내지 개인적인 불쾌감 등의 이유로 부당한 사업상 행위가 관련된 사건들을 3배액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반트러스트 사건으로 변형시키게 될” 분석을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면 보통 반트러스트 사건에서는 배상액은 3배로 된다.

8년을 끌어 온 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항소법원 판결 이후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의 당해 판결에 따라 제2 순회항소법원은 동 사건의 다른 측면들, 예를 들어 배제당한 공급업체인 Discon Inc.

가 당해 협정이 보이콧은 아닐지라도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측면들을 고려할 것이다.

현재 해산된 상태인 Discon사는 Nynex사의 자회사인 New York Telephone사의 구식 전화교환기 교체 계약에서 최저 입찰자였다. Discon사는 작년에 Bell Atlantic사에 인수된 Nynex사가 전화요금 인상안에 대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공모의 일환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AT&T Technologies사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98. 12. 15, The New York Times

**미 FTC, 비유명상표 약품
제조업체를 반트러스트
위반으로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2월 21일, 세계 최대의 비유명상표 약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Mylan Laboratories사가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불안감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2종의 약품 소비자에게 과다청구된 금액 환불을 위해 1억 2,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10개 주의 법무장관들도 금주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계획중이다.

동 위원회는 Mylan사가 2종의 비유명상표 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업체들 중 한 업체와

위법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의사들은 이들 약품에 관해 연간 2,100만 건 이상의 처방을 내린다.

Mylan사는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였다. 피츠버그에 소재한 동 회사의 회장인 Milan Puskar는 동 위원회의 조치가 “급진적이고 성급했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Mylan사가 원료 공급선을 협정으로 구속한 이후 제품가격을 급격히 인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에 따르면 '98년 1월 Mylan사는 clorazepate라는 약품의 도매가격을 500정 들이 한 병에 11.36달러에서 377달러로 인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3월에는 lorazepam이라는 약품의 도매가격이 500정 들이 한 병에 7.30달러에서 190달러로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Mylan사의 터무니없는 이러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적어도 1억 2,00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동 위원회의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언급하였다. 대부분 노인들인 환자들은 이들 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며, 투약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Baer 국장은 Mylan사의 가격인상이 최근 4년 동안 어떤 문제보다도 많은, “상당한 수의 소비자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하원의원들로부터도 다수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들 비유명상표 약품이 가격 인상이 있는 후에도 유명제품들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해 소송은 비유명상표 약품 제조업체들간의 경쟁을 보존하는

방책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lorazepam과 성분이 동일한 유명 제품은 American Home Products Corp.의 Wyeth-Ayerst Laboratories 사업부문이 제조하는 Ativan이다. clorazepate의 유명제품판인 Tranxene은 Abbott Laboratories사가 제조하고 있다.

Mylan사를 대리하는 Rogers & Wells 법률회사 소속의 Kevin Arquit는 "Mylan사의 비유명상표 제품가격은 유명제품 가격의 절반 이하이면서 치료효과는 동일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동 위원회는 12월 21일에 4-0의 표결로 Mylan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송에서는 4개사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Mylan사, Mylan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이탈리아 회사인 Profarmaco사, Profarmaco사의 모회사이며 뉴저지주 East Rutherford에 소재한 Cambrex Corporation, 그리고 Profarmaco사의 유통업체로서 뉴저지주 Westbury에 소재한 Gyma Laboratories of America이다.

동 위원회는 과다지불액 환부를 요구하면서 비교적 새로운 집행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반트러스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위법행동의 중지를 명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동 위원회가 부당이익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이들 업체들을 강제한 적은 거의 없었다.

Mylan사는 Profarmaco사와의 협정은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

하였는데, 이는 적절하고 중단 없는 화학원료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회사는 최근 몇 주 동안은 Profarmaco사가 제조한 일정 화학원료 전 생산량을 Mylan사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 규정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반트러스트법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논문을 작성한 바 있는 Herbert Hovenkamp 아이오와 주립대학 교수는 소비자에게의 환부를 명하는 법원 명령은 제소 초기단계에 FTC가 청구하기에는 "다소 공격적인 구제수단"이라고 하였다.

Baer 국장은 소송에서 Mylan사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금지하고 있는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Mylan사에 대하여 거래제한, 2종의 비유명상표 약품 시장의 독점화 및 독점화 공모를 하였고 주장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일확천금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계획에 투자하게 한다든지 복권이나 휴가여행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우편 또는 텔레마케팅 사기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종종 환부 판결을 얻어낸 적이 있다. 전형적으로는 정부 또는 피고 회사가 기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청구를 검토한 후 환부를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구제수단은 FTC 반트러스트 사건에서는 드문 일이다.

Baer 국장은 가격 인상 그 자체만

으로는 위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위법한 부분은 업체들이 회합하여 경쟁업체를 배제하기로 공모하고 가격을 인상한 점이다. 원료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 비록 원료를 100% 독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을 독점한다면 - 이로 인해 업체는 시장력을, 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Mylan사가 Profarmaco사와 접촉했을 때 동 회사는 배타적 거래협정을 체결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 Mylan사는 바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연차보고서에서 Mylan사는 1997년 12월 현재 97종 중 41종의 비유명상표 제품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든지 생산을 중단하든지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하였다.

Mylan사에 대한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주들은 뉴욕주, 커넥티컷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미네소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및 위스콘신주이다.

■ '98. 12. 22, The New York Times

E U

영국 독점금지법 개정법(안), 의회에서 가결

'97년 10월 상원에 제출된 경쟁제한적 협정의 등록제도 폐지, 경쟁제한적 협정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제도의 도입, 제재금 부과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 거래관행법 등의 개정법안을 '98년 3월에 하원에 제출, 동년 7월 8일 하원을 통과하고 동년 10월 20일에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동년 11월 9일 여왕의 승인(Royal Assent)을 받았다. 동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카르텔 규제

종전의 카르텔 등록제도를 원칙금지제도로 개정하고, 등록제도를 기본으로 한 1976년 제한적거래관행법 및 1976년 제한적 관행재판소법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1976년 재판매가격법도 폐지하였다. 또한 카르텔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 종래에는 공공이익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왔지만 개정법에서는 EC조약 제85조제2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경쟁에 주는 영향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EC조약 제85조제2항에 준하여 위법한 카르텔은 무효로 하였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적용제외 또는 개별적인 적용제외(individual exemption)가 인정되는 이외에 EU에서 적용제외된 행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가 되도록 하였다.

더욱이 수직적 협정 및 토지의 거래협정은 국무장관(무역산업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카르텔 규제의 적용제외

가 된다. 수직적 협정에 대한 정의는 추후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

EC조약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1 또는 2 이상의 사업자에게 남용행위가 금지된다. 남용행위로 예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행위이다.

- 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한 구입가격, 판매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② 생산, 시장 또는 기술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 ③ 동일한 거래에서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행위
- ④ 성질상 또는 거래관행상, 본래의 계약과는 무관한 부가적인 의무를 계약상 부과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종래 1980년 경쟁법의 규정에 의한 반경쟁적행위(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 및 왜곡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가격차별, 끼워팔기, 전제품 구입강제, 배타적 행위 등)에 관한 규정(동법 제2조 내지 제10조)은 폐지하였다.

3. 조사권한의 강화

이번 개정법에서는 공정거래청장관 또는 직원의 조사권한(입회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규제의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한 문서의 작성명령 및 사무소 등에 입회조사권한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얻어 강제적인 입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점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여 강제적인 입회조사권한 없이 종래의 관계인에 대한 문서의 작성명령에 추가하여 통상의 입회조사권한에 대한 규정만을 설치하였다.

또한 상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형사벌의 대상이 되며 2년 이내의 금고와 법정최고액의 벌금(5,000파운드, 약 10,092천원)의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재금의 도입

이번 개정에는 EU형의 제재금을 도입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카르텔을 행하거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 매상고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제재금을 과한다.

또한 가격협정(당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를 제한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의 매상고 합계 및 시장점유율이 경미한 협정에 관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카르텔인 경우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해서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 제3자 소송

이번 개정법에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관의 결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외에 적용제외의 인정과 관련

된 사항도 포함)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장관의 결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관은 소송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위반사실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거나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의 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외에 장관의 결정은 경쟁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반복되지 않는 구속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 경쟁위원회의 설치

이번 개정법에서는 종래의 제한적 관법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쟁위원회는 독점·합병위원회를 흡수하고 그 기능을 계승함과 동시에, 장관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의 독점·합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대리의 정원수 상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였다.

7. EC조약의 해석적용

이번의 개정으로 신경쟁법의 해석에 있어서 EC조약의 해석을 가능한 한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기업활동에서 국내수준과 EU수준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됨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데 있다.

8. 기타

장관은 카르텔 또는 시장지배적지

위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자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카르텔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 사전상담제도를 설정하고 장관의 지도(guidance : 구속력이 없는) 또는 결정(구속력이 있는)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98. 10. 20, OFT 발표문

이탈리아 경쟁당국, 카르텔 혐의로 5대 회계법인 조사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5대 회계법인 이 상장회사들에 대한 의무적 회계감사 시장에서 가격고정 카르텔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 대변인은 "반트러스트법의 위반 혐의"가 존재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인데 그 중의 하나는 가격고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감사협회인 Assirevi 회원들간의 업무조정이다.

이들 5대 회계법인은 - PwC사, Arthur Andersen사, Deloitte Touche Tohmatsu사, Ernst & Young사 및 KPMG사 - 당해 조사의 진행상황을 경계하면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트러스트 당국은 당해 조사는 '99년 6월 30일 이전에 끝낼 것이며 만

일 위반사실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은 다른 유럽국가 내에서 유사한 조사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5대 회계법인들이 가격 및 시장점유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장회사에 대한 의무적 회계감사 실시자격은 정부인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들 사이에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우리는 공식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한 판리는 밝혔다.

Assirevi의 회장인 Adolfo Mamoli는 당해 조사가 Assirevi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1995년의 한 문서를 근거로 개시되었는데, 이는 업무조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복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Mamoli 회장은 Deloitte & Touche사 소속인데, 당해 통보는 "결코 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공익을 위해 회계감사법인들의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다. 5대 회계법인들은 의무적 회계감사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5대 회계법인들은 올해 PwC사와 Coopers & Lybrand사간의 기업결합, 그리고 KPMG사와 Ernst & Young사간의 기업결합 시도에 뒤이은 광범한 조사의 결과 자산들이 반트러스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사석에서 밝히고 있다. 동 조사결과 경쟁당국은 당해 시장에서의 이들 법인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들 법인은 감사협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인들은 회계감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으로까지 수입료를 인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당국은 우리가 악의 화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인들이 수입료와 서비스의 질을 낮춘 것뿐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1995년 문서의 존재가 이번 조사의 강력한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해 법인들은 그 문서가 작성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이들은 최근 기업결합들로 인해 제기된 현재 및 미래의 시장에 대한 우려 해소의 일환으로 규제당국이 과거 사실 중에서 손쉬운 대상을 선택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 '98. 12. 14,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수도용 살균제 담합으로 10개사에 배제권고

긴키(近畿)지방의 상하수도용 살균제의 납입을 둘러싸고 아사히 가라스(旭硝子, 도쿄 치요다(千代田)구)사 등 대형 화학약품 제조·판매회사 10개사가 입찰 전에 담합하여 납입예정사와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2월 22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에 기한 배제권고를 행하였다.

배제권고를 받은 회사는 그 외에

미쯔비시 가스화학(도쿄 치요다구), 다이소(오사카시 서구)사 등이다.

권고서에 따르면 이들 10개사의 영업담당자는 1994년 3월부터 오사카시 영 하수처리장에 살균제인 「저식염차아염소산 소다」를 납입할 때 입찰 전에 각 회사 회의실 등에 모여 가격을 결정하여 왔다는 것이며, 오사카 부발주의 정수장과 관련해서도 같은 형태의 담합을 반복하여 왔다.

이 중 9개사는 교토시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의 납입에 대하여서도 배제권고를 받았다.

공취위에 따르면 작년도 살균제 발주실적은 권고대상 지역에서만 연간 약 5억 4,000만엔이고, 낙찰가격은 현장조사 후 30~40% 인하됨으로써 그 차액인 연간 1억 수천만엔이 담합에 의한 초과 이익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 '98. 12. 22, 요미우리신문

캐나다

2건의 캐나다 은행간 기업결합 저지될 듯

캐나다 재무장관은 만일 성사될 경우 캐나다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업결합으로 기록될 2건의 은행간 연합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이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12월 13일 전하였다.

Paul Martin 재무장관은 12월 14일 아침 6대 은행 중 4개 은행이 관련된 기업결합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재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동시에 그는 지난 12월 11일 금융기관 감독원과 경쟁국이 송부해 온 당해 기업결합에 관한 보고서들을 공표할 것이다.

이들 보고서는 이들 은행간의 기업결합이 신용카드, 소매금융 및 투자 활동 영역에서 용인할 수 없는 과도한 집중을 야기할 것임을 Martin 장관에게 확신시킨 것으로 보인다. Martin 장관은 이들 보고서를 공개할 때 이들 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결합 제안을 재협상할 여지가 없음을 밝힐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Martin 장관과 정부는 캐나다의 Royal Bank가 Bank of Montreal을 122억 4,000만달러에 취득하겠다는 제안과 87억달러 규모의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와 Toronto-Dominion Bank간의 기업결합 계획을, 적어도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지할 것이라고 한다.

"은행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Alberta주 Calgary에 소재한 Mawer Investment Management사의 파트너인 Bill MacLachlan은 말하였다. "어쨌든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을 저지하게 되며, 이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Bank of Montreal의 대변인인 Joe Barbera는 동 은행이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재무장관의 공식적 발표를 기

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점점 좌절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1월 23일의 우리의 발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었지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발전하여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며 11개월간 국내의 진전상황이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옳았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Barbera 대변인은 언급하였다.

CIBC 및 TD Bank의 임원들은 논평을 거부하였으며, Royal Bank의 임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98년 1월 23일, 자산 규모로 캐나다 제2위인 Royal Bank가 제3위의 Bank of Montreal을 매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당시로서는 자산 규모로 북미 제3위의 은행이 탄생되게 된다. 이로부터 3개월도 채 못되어 CIBC와 TD Bank가 주식교환 형태로 기업결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CIBC는 자산 규모로 캐나다 최대의 은행이며 시장점유율로는 제5위이다.

■ '98. 12. 14, Los Angeles Times

호 주

오스트레일리아 통신시장에의 접근 확대될 듯

- ACCC, Telstra사에 대하여 지역전화망 개방 요구

오스트레일리아의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인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

자 위원회(ACCC)는 12월 14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전화회사인 Telstra사에 대하여 경쟁업체들이 동회사의 지역 전화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 초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ACCC의 결정은 통신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광범할 것이라고 동 위원회 위원장인 Allan Fels는 언급하였다.

“경쟁업체에 대하여 지역망에의 직접적인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전화 서비스 제공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과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서비스 및 경쟁 전화업체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Telstra사의 지역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은 Telstra사의 다른 기간시설에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접속비용도 낮출 수 있다. 경쟁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당해 결정에 따라 지역전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Telstra사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한 전화회선을 소매 고객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고 Fels 위원장은 언급하였다.

이는 국내외를 포함한 모든 통화로의 인하로 이어질 것이며, 경쟁업체들은 처음으로 지역전화 서비스 및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경쟁업체들의 활동 영역은 Telstra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Telstra사는 불필요하게 이들 경쟁업체들의 서비스 제공비용을 높이고 있다.”

결정 초안은 ACCC의 지역 통신서

비스에 대한 계속되는 조사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동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당해 결정 초안에 대한 산업계의 논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의 시행을 위해서 ACCC는 일부 서비스가 모든 전화회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이용가능하다고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선언된 서비스의 접속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야 하며, ACCC는 최종 중재자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Fels 위원장은 말하였다.

Telstra사는 12월 14일 동 회사는 당해 결정 초안의 전문을 입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이 최종소비자들에게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미국 및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제공업체들 및 Telstra사의 서비스 재판매업체들이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 '98. 12. 15, Financial Times